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94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9조제3항”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대량파괴무기등”이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를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3의 전략물자 허가기관”을 “별표 3에 따른 전략물자의 허가기관(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로, “호에 대해”를 “호와 같이”로, “따른”을 “따라 설립된”으로, “한다)에”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에 전략물자등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판정기관”을 “방위사업청 및 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허가기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정을 한다.

1. 전략물자관리원 : 별표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과 별표2의2에 해당되는 물품등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제12조제2항 중 “관정은”을 “관정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전문관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기술(제72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 수행한 자가관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점검결과를 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로 한다.

①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관정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

2. 자가관정 절차 및 방법

3. 자가관정시 주의사항

②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2.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

3.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가판정시 사용한 자료
제2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자가판정서”를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로 한다.

제21조제7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부터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진술서”를 “진술서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가판정서”를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료 등”을 “자료와 그 밖의”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3호 중 “대량파괴무기 등”을 “대량파괴무기등”으로 한다.

제65조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의”로 한다.

제79조제1항제5호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한다.

제85조제1항제6호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의2까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 위반 행위내용 위반유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유형	0.2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우려 거래자에게 수출하거나 수출신고를 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거나 수출신고를 한 경우 -상환허가 위반인 경우	-상·중 이외 기타 사항인 경우
------	-----	---	---	-------------------

별지 제5호 서식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이수 번호 Education Registration No.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 조문은 이 고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부터 별표 2의2까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안은 이 고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전략물자등”이라 함은 전략물자 또는 <u>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u>을 말한다.</p> <p>4. ~ 14.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대외무역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19조제3항-----.</p> <p>4. ~ 14. (현행과 같음)</p> <p>15. “<u>대량과괴무기등</u>”이란 <u>대량과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u>를 말한다.</p>
<p>제5조(허가기관) ① <u>별표 2 및 별표 3의 전략물자 허가기관</u>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② (생 략)</p>	<p>제5조(허가기관) ① ----- <u>별표 3에 따른 전략물자의 허가기관</u>(이하 “<u>허가기관</u>”이라 한다)-----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판정기관) ① <u>전략물자 판정기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기관</u>(이하 “<u>허가기관</u>”이라 한다)과 같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u></p>	<p>제7조(판정기관) ① <u>허가기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정</u>을 한다.</p> <p>② -----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u></p>

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이하 '전략물자관리원'이라 한다)에 판정업무를 위탁한다.

1.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2. 별표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③ 판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49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2조(전략물자등의 판정) ① (생략)

② 전략물자등의 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제7조에 따른 판정기

관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 호와 같이 ----- 따라 설립된 ---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에 전략물자등에 대한 -----.

1. 전략물자관리원 : 별표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과 별표2의2에 해당되는 물품등

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별표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③ 방위사업청 및 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판정기관"이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략물자등의 판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판정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

관에 의한 전문판정으로 구분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대한 허가는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2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 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 무역거래자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가판정) ① 자가판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서 규정하는 물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기술(제72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제13조(자가판정) ①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판정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전략물자 관리제도 개요

2. 자가판정 절차 및 방법

3. 자가판정시 주의사항

②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

② 판정기관의 장은 매반기 자가판정서의 기재사항 미비 등 부실여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자가판정인에 대한 교육 등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

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2. 물품등의 성능,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상품안내서, 사양서 등 자료
3. 공인시험성적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자가판정시 사용한 자료

③ -----

----- 있으며 점검
결과를 허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① -----

-----.

1. (현행과 같음)
2. -----

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1부. 다만, 해당 전락물자와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삭 제

4. ~ 8. (생략)

② ~ ④ (생략)

제21조(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 면제 등) ① ~ ⑥ (생략)

⑦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의 전락물자를 핵공급국그룹의 비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20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⑧ 제2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를

----- 자가판정서(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 ----. -----

-----.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 면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후단 삭제>

⑧ -----

면제한다.

1. 2. (생략)

3. 별표 4의 핵공급그룹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국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에 따라 제20조제2항제4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⑨ · ⑩ (생략)

<신설>

제29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①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자포괄수출허가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신

-----.

1. 2. (현행과 같음)

3. -----

-----.

⑨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부터 제5항, 제7항부터 제10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① -----

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
수하인 진술서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
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른 자가판정서 다만, 해
당 물품등과 관련한 국제수출
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
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28조의 사용자포괄수출허
가 신청조건 입증 자료 등 수
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생략)

제44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
가의 사후관리) ① 원자력플랜
트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기
술을 이전하기 전에 원자력안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기
술이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단, 원자력안전위
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사업자의

-----.

1. -----
----- 진술서 또는 별지 제2
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
자 서약서

2. -----

----- 자가판정서(자가판정
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
내의 것) -----
-----.

3. -----
----- 자료와 그
밖의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
가의 사후관리) ① -----

-----제7조제2항
제2호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
기술원장-----

긴급한 기술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원자력플랜트기술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기술을 이전한 이후에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50조(상황허가의 대상)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 (생략)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의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④·⑤ (생략)

제65조(사후관리) 발급기관의 장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상황허가의 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2. (현행과 같음)

3. -----

-- 대량파괴무기등 -----

④·⑤ (현행과 같음)

제65조(사후관리) -----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 받아 수입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및 불법수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79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지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의한 수출제한 여부

② (생략)

제8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이후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수출제한을 받은 경우
7. ~ 9. (생략)

-- 무허가수출등의 -----
--.

제79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무허가수출등-----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취소)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 무허가수출등-----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